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최장보: 201년 2월 2일)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2001년 1월 일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대 표 계 리 인 은 원 환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2. 연금지급개시연령,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연금지급개시연령(Y)		55세 ~ 70세
보험 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Y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Y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Y세 계약해당일부터 5,10,15,20년
피보험자 가입연령		만18세 ~ (Y-10)세

3.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4.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5. 납입보험료의 한도 : 월 100만원 이하

6. 배당에 관한사항

가. 배당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 보험년도 말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방법

가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소멸시에 보험금등에 더하여 지급한다.

(2) 제2보험기간 1년전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으로 지급하며, 제 2보험기간 개시후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 2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기 타

가.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공시기준이율은 아래의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및 「정기예금이율」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이 이를 산출 공시한다.

-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은행을 정한다.

- (2) 공시기준이율 산출에 관한 사항

$$\cdot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_1 + A_2 + A_3}{3}$$

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cdot \text{가중이동평균이율}(A_i) = \frac{M_i(-3) \times 1 + M_i(-2) \times 2 + M_i(-1) \times 3}{6}$$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

- (3) 해당적용시점(1월, 4월, 7월, 10월)의 공시기준이율의 80%~110%의 범위내에서 연4회(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로 한다. 이 공시이율은 3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단, 최초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4) 공시이율은 연복리 2%를 최저이율로 한다.

나. 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약관대출이율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 +1.5%』로 하고,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월납보험료×120』으로 한다.

바.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사.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 (2) (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 (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 제지금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3)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약관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 (4)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다.

아.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

(2)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3)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해약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및 나. 에 있어서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